



특허청

# 보 도 자 료

다시, 대한민국!  
새로운 국민의 나라

|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|
| 보도 일시 | 2022. 6. 13.(월) 09:00 | 배포 일시 | 2022. 6. 13.(월)        |
| 담당 부서 | 산업재산보호협력국<br>국제협력과    | 책임자   | 과 장 정대순 (042-481-5063) |
|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| 담당자   | 사무관 최은림 (042-481-8766) |

## 최신 해외 주요국 지재권 정보, 바로 여기에!

### - 특허청-대한변리사회, 해외 지재권제도 설명회 개최(6.14) -

- 특허청(청장 이인실)은 최근 주요국의 지재권 제도 동향과 개정사항에 관한 정보제공을 위해 대한변리사회와 함께 「2022년도 해외 지재권 제도 설명회」를 6월 14일(화) 오후 3시 대한변리사회관(서울 서초구)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.
- 이번 설명회는 변리사 등 전문가를 대상으로 온·오프라인 병행 개최되며, 현지 국가의 특허관과 변리사가 직접 ▲미국의 상표현대화법(김윤정 변호사, LA IP-desk) ▲유럽의 단일특허제도 도입(박진석 변리사, 특허법인 다래) ▲중국의 국제디자인출원 실무(이영연 변리사, 북경정림 특허사무소) ▲일본의 특허출원 비공개 제도(신준호 특허관, 주(駐)일본 한국대사관) 등 주요국의 최신 지재권제도를 소개할 예정이다.
- 설명회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.
  - 미국은 「상표현대화법(Trademark Modernization Act)」이 '21년 12월 부터 시행되어 일정기간 동안 사용되지 않은 상표권은 재심사를 거쳐 효력을 말소하는 제도가 도입된 바, 이에 대한 실제사례들과 주의사항이 소개될 예정이다.
  - 유럽에서는 40여 년간의 협상 끝에 올해 하반기부터 유럽특허청(EPO)이 심사를 완료한 특허에 대해, 25개 유럽 연합(EU)국가에서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'단일특허'제도가 시행될 예정이다. 이에 따라 단일특허제도 하에서의 출원방법 등이 설명될 예정이다.

- 중국은 최근 「산업디자인의 국제등록에 관한 헤이그 협정의 제네바 개정협정」에 따른 ‘국제디자인 출원제도’를 시행(‘22.5.5.)하고 있다. 이에 따라 새롭게 도입된 부분디자인과 화상디자인 출원 시 주의 사항 등이 소개될 예정이다.
  - 아울러, 일본에서는 「경제안전보장추진법」이 최근 국회에서 통과(‘22.5.12.)되어 동법에 포함되어 있는 특허출원 비공개 제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소개될 예정이다.
- 이번 설명회를 통해 국내 출원인, 대리인들이 해외 주요국 제도의 개정사항을 충분히 숙지하여 지재권의 출원 및 관리 등의 절차에서 해외지재권기관과 보다 원활히 소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.
- 설명회 참석은 변리사회(02-3486-3487)를 통해 사전 등록한 경우에 가능하나, 설명회가 끝난 이후 특허청 누리집(www.kipo.go.kr)에서 설명회 발표 자료를 내려 받을 수 있고,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유튜브 채널(www.youtube.com/user/kipracafe)에서 설명회 영상을 볼 수 있다.
- 특허청 문삼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“최근 우리 기업의 활발한 해외 진출로 국제 지식재산권 출원이 증가하면서 변화하는 해외 지식재산권 제도를 적시에 파악하여 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”면서,
- “특허청은 앞으로도 현지 특허관은 물론 전문가들과 긴밀히 협력하여 주요국 지식재산권 제도에 관한 정보를 설명회, 유튜브 등 다양한 온·오프라인 수단을 통해 적극 제공할 것이다.”고 밝혔다.

## □ 개요

- (제목) 해외 지재권제도 설명회
- (일시/장소) '22. 6. 14(화), 15:00 - 18:10 / 변리사회관
- (주최) 특허청, 대한 변리사회
- (대상) 변리사 등 전문가

## □ 프로그램(안)

| 시 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발표내용                      | 발표자 (소속)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15:00-15:10                       | • 인사말씀                    | 문삼섭 국장<br>(산업재산보호협력국)         |
| 15:15-15:55<br>(PST, 23:15-23:55) | • 미국 개정 상표법*의 이해          | 김윤정 변호사<br>(KOTRA LA IP Desk) |
| 16:00-16:40<br>(CST, 15:00-15:40) | • 헤이그협정 가입 후 중국 디자인 출원 실무 | 이영연 변리사<br>(북경정림특허사무소)        |
| 16:45-17:25                       | • 일본 특허출원 비공개 제도          | 신준호 특허관<br>(駐 일본 한국대사관)       |
| 17:30-18:10                       | • EU 단일특허·통합특허법원제도        | 박진석 변리사<br>(특허법인 다래)          |

## □ 주요 설명내용

| 구분 | 주요내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미국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<b>등록상표 말소 및 재심사 제도</b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<b>(주체)</b> 누구든지 또는 심사관 직권</li> <li>• <b>(대상)</b> 상업상 사용하지 않은 지정상품(서비스포함)의 전체 또는 일부에 대해 등록상표 말소는 등록일로부터 3년 이상 10년 이내에, 등록상표 재심사는 등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상표의 등록 전 출원상표가 사용되지 않았을 경우</li> <li>• <b>(제출서류)</b> 사용하지 않은 지정상품을 특정하여 상표가 상업적으로 사용되지 않았다는 합당한 진술서를 제출</li> </ul> </li> </ul>                     |
| EU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<b>EU 단일특허 및 통합특허법원</b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<b>(단일특허)</b> 모든 참여국에 동일한 효력을 갖는 하나의 특허권을 창출할 수 있으며, 절차의 간소화로 인한 특허취득 소요 기간 단축과 평균 비용 감소 기대</li> <li>• <b>(통합특허법원)</b> 일원적인 소송제도에 따라 유럽의 여러 국가에서 침해가 발생한 경우 각국에서 침해소송을 제기할 필요가 없으며, 한 번의 소송 절차에 의한 광범위한 권리행사 가능</li> </ul> </li> </ul> <p>※ 대상국가: EU 회원국(27개국) 중 <b>25개국</b> (크로아티아, 스페인 제외)</p> |
| 중국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<b>국제 디자인출원제도 도입</b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<b>(개요)</b> 세계지식재산기구(WIPO) 국제사무국에 하나의 국제출원서를 제출하여 여러 계약당사자 영역에서 디자인을 보호받을 수 있는 제도</li> <li>• <b>(장점)</b> 등록 이후에는 디자인의 권리관계 변동을 일괄 처리할 수 있어 여러 국가에서 디자인을 등록하고자 할 때 유용하게 활용 가능</li> </ul> </li> </ul> <p>※ 우리나라는 '14년 7월부터 동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, 중국의 경우 올해 5월부터 시행 중</p>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일본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<b>특허출원 비공개 제도</b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<b>(대상기술)</b> 국가·국민 안전을 해칠 우려가 큰 발명에 대해 우려의 정도, 산업계 영향 등을 고려하여 선정</li> <li>• <b>(비밀지정)</b>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지정(1년씩 연장)하며, 지정되면 심사가 보류되고 취하·실시·공개 등이 제한</li> <li>• <b>(국내출원 의무화)</b> 비밀대상을 포함한 일본 내 완성발명에 대하여 국내에 우선 출원하는 의무 부여</li> </ul> </li> </ul>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